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1건(본처분 10건, 현지처분 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6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처분현황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환급
14	13	1	13	2	6	3	2	12,000	11,600	400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징계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만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지침 [별표 4]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감사사무처리기준」 제28조에 따르면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적용하여야 하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직원상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규정 [별표 제4호] ~ [별표 제8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징계규칙 및 지침의 ‘징계기준’보다 완화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관련규칙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신분상 조치 처분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규칙에 위반되는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징계관련 제도에 대해 관련법령 보다 완화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선]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징계처분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규정 (인천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권고 요구

제 목 신용보증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법원 담보공탁금 조기회수 부적정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보증사고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보증기업에 대한 사고발생사실을 채권자¹⁾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하고 지체없이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관계자²⁾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구상권의 회수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현금인 담보공탁금은 공탁금(기타유동자산)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³⁾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관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제1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1) 재단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금융기관 등)를 말함

2) 「보증사고관리규정」 제4조(채무관계자의 범위) 1. 신용보증사고기업, 2. 신용보증사고기업의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3. 상속, 유증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자. 다만,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봄, 4. 합병, 분할, 채무인수 등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은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재산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하며, 인가된 뒤에 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된 채무자에 대하여 한 가압류 등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담보취소 사유⁴⁾가 발생하여 담보취소 신청과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재단 채권보전조치에 따른 현금공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공탁금 조기 회수를 통한 채권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단(영업본부장⁵⁾)에서는 “채권관리(담보취소) 업무지도”를 2021.2.19. 각 지점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집행 불능이 되거나 지급명령 청구소 승소 등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는 등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채무자 ○○○ 외 ○명분 **,***천 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담보공탁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2. 등록면허세 환급 미신청

재단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의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재단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보전조치 비용으로 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4)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현재는 사업본부장

한편, 「지방세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고, 재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1조에서는 등록세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등록세 관할 관청 세무과에 등록세 등의 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법원 가압류 등 신청이 기각·각하되는 사유 등으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환부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판예규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법원이 보증서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법원이 담보 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⁶⁾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납비용 환수사유 발생시 즉시 법무사 등을 통해 예납비용 일부를 즉시 환수 신청하여 대지급금 회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단(영업본부장)에서는 “채권 관리 업무 유의사항 시달”을 2019.12.10. 각 지점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압류 등 신청이 기각·각하된 00건 ***,***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예납비용 환수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이 미흡하다.

3. 채권관리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단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6) 신용보증재단을 말함

구상권의 행사, 중소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은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으로 조직되어 정원 00명에 현원 00명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분장 중 채권보전조치 등 채권관리 업무는 사업본부(보증사업부와 각 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금융이자 포함) 증가와 이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손금처리 되어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5.4%p 대폭 증가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세계 경제 및 지역 경제 침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자금 지원과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보증사고 비율도 함께 증가한 원인도 있겠으나,

2021년 시·도별 재단 대위변제 회수율을 비교해보면 재단의 채권관리업무 담당직원의 구성비율이 전국평균 2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수율이 29%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구상권 회수 활동 이후의 채권관리업무 전반을 본점에서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에도,

재단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실익있는 구상권 청구업무는 지점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조정채권, 위임채권의 구상권 청구업무와 상각, 매각, 관리종결 업무 등 부실채권정리 업무는 본점에서 관리하여 본·지점 채권관리 인력의 중복배치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재단의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재단의 구상권 잔액은 전국순위 4위이나 총인원 중 관리업무에 투입되는 직원의 비중이 평균이하이고 향후 소상공인 보증지원 정책이 감소하게 될 때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측해보면 현재의 관리업무 인력구조와 업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된 사건 등 담보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미회수 공탁금 **,***,***원(0건)과 가압류 기각 사건의 미환급 등록면허세 ***,***원(00건)에 대해 조속히 회수 및 환급절차를 진행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최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재단의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관리의 본점중심 업무개선 검토와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행사·홍보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립기념,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연수지점 개점 등을 기념하여 대내외 홍보를 위한 기념품 구입을 행사홍보비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권고 요구

제 목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국외여비 집행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하며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여비규정」 제6조(특례)에 따르면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제22조(지급기준)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별표 제5호 및 별표 제6호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임, 체재비, 준비금, 사망자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하고 기타경비는 기밀비나 업무에 관련된 등록비, 도서자료의 구입비 등 기타특수경비를 말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며 여비는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한 「여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외출장(연수)시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외 연수 국외여비 지급내역과 같이 2018년도 해외 연수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산정 금액 *,***,***)원이 연수 주관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통보한 여비 금액*,***,***)원 보다 많아 주관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국외여비를 감액 지급하였다.

반면 2019년 대표단회의 참가 시에는 이전까지 지급하지 않던 국외일비를 포함하여 *,***,***)원을 지급하여 주관기관 책정금액 총액 *,***,***)보다 증액 지급하였다.

그 결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지급하여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국외여행보고서 지연 제출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보고 등)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개요, 출장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첨부 자료(여행계획서,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19년 상반기 직원 해외연수 및 하반기 직원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귀국 후 약 110일, 240일 경과 후 지연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여행 후 30일 이내에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국외여비 지급 시 임의로 증감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비규정」 및 「여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권고(2021.11.10.)하였다.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⁷⁾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산 누수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회수 불가능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근거규정에 따라 미회수 되어야 함에도 기관의 위신 고려나 민원 회피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치·지연 및 관행적인 채권 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감경이 불가피한 예외 사유의 구체화 등 공정한 소송직무 수행 및 공공기관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송비용회수를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관리 규정」 제45조(소송비용의 처리)에 따르면 제소송비용은 일단 대지급 처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구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송업무처리기준」에서는 소송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으나 소송비용 미회수 건이 00건으로 소송비용회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소송업무처리기준」에는 소송비용회수방식·절차 및 소송비용 미회수를

7) 소송비용: 소송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출석비 등 포함)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

위한 예외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위한 신청 및 착수·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등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방안의 구체화와 비용회수가 곤란한 상황에 대해 회수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등 소송업무처리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채권관리업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소송업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여 소송비용 조기 환수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등)에 통보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지침을 통보하고 있다.

1. 예산 조정사항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동일한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조정은 동일 “목”내 “세목”간 예산을 관리자⁸⁾(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비예산의 항목간 및 자본

8) 인천신용보증재단 「회계규정」 제32조(예산관리자) : 예산의 관리자는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예산의 과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9조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단의 지출예산 과목구조는 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18. 9월 이후) 중 00건의 예산 전용 및 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의 전용 및 조정은 이사회 의결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기 성립된 예산액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에도 재단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시행한 예산의 조정 사항을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액을 변경 확정하였다.

그러나 기 성립된 예산액을 예산의 변경(조정) 사용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변동된 예산현액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복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의 적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사회 의결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 재량으로 변경사용한 후 다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예산 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집행부의 정당한 재량사항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단은 예산의 변경(전용 및 조정) 사항과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예산관리 시스템에서 각각 분리된 항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제 예산현액이 중복하여 변경 처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로 성립된 예산액과 그 범위 내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예산현액의 개념을 혼동함으로써 2020회계연도 내 발생한 예산의 전용 사항을 예산결산자료(2020회계연도부터 작성)의 지출예산결산 보고서 상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의 예산전용액조서에는 명시하여 예산결산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재단 「회계규정」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변경 사용 및 이월 관련 규정 미비

재단 「회계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비예산의 항목간 및 자본예산의 과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4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의 「회계규정」상 예산의 전용 규정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준용 가능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 등의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서도 사고이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예산의 운용 상 발생하는 예산의 조정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항 등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목 구분만 있는 현행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체계를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하여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성질별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재단에서도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관리업무비 예산은 기존의 관, 항, 목의 예산과목을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의 「회계규정」상 예산의 변경 사용 및 이월 관련 규정도 예산과목의 실제 운용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나. 예산 편성 관련 규정 준수 미흡

재단 「회계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예산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에서는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간(2018. 9월 이후) 중 재단의 회계연도별 자체 예산편성지침 수립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을 갈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예산편성 기준의 수립은 필요함에 따라 재단에서는 「회계규정」에 따른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따르면 재단은 사업연도⁹⁾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 「회계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관리자는 예산안을 편성한 후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재단의 예산안 제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 사업연도 개시 0~0일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음으로써 「회계규정」에 따른 예산의 확정을 위한 적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지도·감독부서인 인천광역시 ○○○○○○과에서는 제출된 재단의 예산안을 매년 12월 31일에 승인 통보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아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9조 :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제2조 :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예산결산 자료의 제출 미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단 「회계규정」 제118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통보)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상의 해당 서식에 의거 작성된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재무결산 보고서(부속명세 포함),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를 결산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대상기간 중 재단의 결산자료 제출사항을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이 통보되기 전인 2019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재무결산만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예산결산에 대한 자료 제출 사항이 없었고, 이에 따라 예산의 변경사용 및 이월, 예산집행실적 등의 사항을 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예산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 결제를 받았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위한 결산자료 제출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무결산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자료에도 예산결산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예산결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하였다.

아울러 “1. 예산 조정사항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부적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회계연도 내 발생한 예산의 전용사항 등을 예산결산자료의 지출예산결산 보고서 상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의 예산전용액조서에만 반영함으로써 예산 결산자료의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예산의 전용, 조정 등 예산의 변경사용과 추가경정예산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예산액과 예산현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매년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산결산 자료 작성 시 자료별 내용이 일치되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자료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산자료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예산의 변경사용 및 이월 사항을 포함한 재단 「회계규정」상 미흡한 사항을 재단의 「회계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단의 예산안이 제출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보증료 환급 관련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 보증 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재단의 업무 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후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되, 주채무자가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에 한하여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분할수납 하는 경우 수납된 보증료의 환급은 전액상환 또는 대위 변제 시 정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지급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에 의하되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보증료와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르면 환급 하여야 할 보증료를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하고, 차기 보증료 수납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르면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분은 매년 12월말에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이익) 계정으로 일괄하여 대체기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도상환, 전액상환, 분할상환 등으로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미수채권 상계 등의 정산을 거쳐 적정금액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즉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하고,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분은 매년 12월말에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이익) 계정으로 일괄하여 대체기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 각 지점에서는 재단 「감사사무처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일일감사 일지에 매일 미환급 보증료 미처리건 보유 여부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간(2018. 9월 이후) 중 발생한 반환대상 보증료 000건 ***,***천 원을 감사일 현재 까지 환급하고 있지 않으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후 5년 경과 분 000건, **,***천 원에 대하여 매년 12월말 이익금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하지 않아 보증료 환급 및 미환급보증료 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 감사일 현재 반환 대상 보증료 000건 ***,**8천 원을 빠른 시일 안에 환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 후 5년이 경과된 000건 **,***천 원은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이익) 계정으로 일괄 대체기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른 보증료 환급 및 미환급보증료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대상기간인(2018. 9월 이후) 중 총000,000건의 신청 접수 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였다.

재단의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보증 표준처리 기간은 표준심사 및 정밀심사는 10일, 소액심사는 7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또는 시장이 통지하는 업무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는 신용보증으로서 신용보증 신청의 급등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표준처리기간의 소요 일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통지일까지로 하되, 기간중 토요일, 공휴일 및 이사회 의결, 보증심사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보증신청기업이 요청한 취급보류요청 기간 및 소상공인디딤돌센터의 교육(컨설팅)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요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의 「보증심사운용요령」 제6조에 따르면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 100백만 원 이하 보증은 소액심사로,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 100백만 원 이하

(시설자금의 경우 200백만 원 이하) 보증은 표준심사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액심사 대상 중 표준심사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심사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액심사 및 표준심사 이외의 보증은 정밀심사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액심사 및 표준심사 대상 중 정밀심사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단에서는 보증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연장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하여 심사방법별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8. 9월 이후) 중 접수된 총000,000건에 대한 심사방법별 불산입 기간을 제외한 표준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000,000건은 처리기간을 준수하였으나, 00건은 표준처리기간을 1일부터 최장 37일까지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연도별 신청 접수건 비율과 대비하여 살펴보았을 때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접수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모든 접수 건에 대한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였으나, 2020년 대비 상대적으로 접수건수가 적은 2019년(△00,000건)과 2021년(△00,000건)에는 각각 0건과 00건의 표준처리기간 미준수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에는 최장 21~37일까지 처리기간이 지연된 건이 0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20. 3~9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접수건(총00,000건)의 처리를 위해 00여명의 외부 인력을 지원하여 신속지원팀이 구성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속지원팀이 미구성되었던 2020. 1~2월 및 10~12월의 총 접수건 00,000건과, 2021년도의 같은 기간인 2021. 1~2월 및 10~12월(12.10.까지)의 총 접수건 00,000건을 보았을 때, 총 접수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표준처리기간을 미준수한 건수는 00건이 발생하여, 표준처리기간 내 신용보증 업무 처리가 다소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등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 처리 시 심사방법별 표준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자금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2021. 6. 23. 개정) 제4조의2(사전심사) 제1항은 “건당 20만 원 초과집행이 예상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집행 사전심의 요청서(별표2)에 의거 감사실에 전자문서로 사전심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심의 대상인 총 00건(**,***천 원)의 집행 중 [표] 같이 0건(*,***천 원)에 대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미이행 한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재단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 제4조의2(사전심의) 제2항은 “제1항의 사전심의를 감사실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지출결의서에 사전심의 결과 문서를 첨부(별표3)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사전심의 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사전심의 결과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집행 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지출결의서의 첨부 문서인 ‘사전심의 결과 문서’를 미첨부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규정」(2019. 8. 29. 개정) 제6조(기록물의 관리)는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 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규정 상 기록물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기록물 처리부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록물 관리규정」을 제정한 2017. 3. 24. 이후 2019년도 12월에 단 *회만 교육을 지연하여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교육을 미실시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기록물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 ❖ 국제기준에 맞춰 경영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전사적 노력
- ❖ 재단의 청렴조직 운영 의지에 대한 임직원 내재화로 클린재단 조성

□ 현 황

- 최근 LH사례로 인하여 공직자의 반부패 실천과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
-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단이 글로벌 기준에 따른 강력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표명하여 공공보증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 필요

□ 추진실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021.04.22.)
 - 부패방지 방침 수립 및 대내외 전파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 제정 및 시행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 심사기관 : 한국표준협회
 - 심사일정 : 1 단계 서류심사(2021.10.15.)
2 단계 인터뷰 심사(2021,10.25. ~ 10.26.)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완료
 - 인증 취득일 : 2021.11.09.

□ 기대효과

- 재단의 기관 운영은 물론 주요 사업 전체에 걸쳐 부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 관리 가능
- 부패방지에 대한 재단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으로서의 평판과 명성 회복

2 취약계층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 저소득 등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노력
- ❖ 市 이차보전 지원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대폭 완화

□ 현 황

- 고금리 · 사금융으로 인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
 - * 저신용자 이용금융기관 비율(%) : (대부업) 42.2, (저축은행) 19.8, (카드캐피탈) 17.9
 - ** 기존 서민정책금융제도(중금리) : 미소금융 연 4.5%,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연 10.5% 이내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평가 심사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 추진실적

- 인천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2020~21)
 - 지원실적 : 450억원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금융소외(저신용 등), 사회적약자(장애인 등)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1.3% (이차보전 연 1.5% 지원)
- 인천시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 (2020~21)
 - 지원실적 : 6,275억원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신용등급(평점) 무관)
 - 대출금리 : 연 1.6% (이차보전 연 1.5% 지원, '21년도는 1년간 이자전액 지원)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로 포용적 금융복지 확대
 - * (기존) 연 4~10%대 중금리 ⇒ (현재) 연 1%대 초저금리 지원
 - ** (지원효과) 업체당 연간 이자비용 약 30만원 절감 (30만원=2천만원×연 1.5% 이차보전)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확대
 - * ('19) 8.3% ⇒ ('20) 7.8% ⇒ ('21) 13.2% (보증지원 업체 중 저신용자 비율)

3 법원 공고 자료를 활용한 채권관리 시스템 도입

- ❖ 채권분류를 통한 채권별 관리 시스템 도입
- ❖ 법원 공고자료 활용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도모

□ 현 황

- 재단 구상권 중 조정채권(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등)이 5,614건 (66,003백만원)으로 약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채권별상황에 맞는 분류체계 도입 필요
- 법원 사건(개인회생, 파산)의 폐지 시 채권기관(재단)에 별도의 통지가 없어 채권보전조치에 난항을 겪음

□ 추진실적

- 재단 조정채권(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등)에 대한 세부 분류를 통해 채권 상황별 관리체계 도입
 -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별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채권 상황별 신속한 보전조치 가능
(관리 2019-1789, 2019.12.04.) 「조정채권 전수조사 계획 수립」
- 법원 공고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월별 사건조회 현행화를 통해 신속한 보전조치 및 채권관리 가능

□ 기대효과

- 채권별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개인회생 폐지 기업에 대한 신속한 채권 보전 조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에 기여 (2건, 23,190천원)

순번	고객번호	개인회생 폐지	보전 및 강제집행	채권회수일	회수금액
1	669236	2020.08.06	2020.09.21	2021.02.01	5,260,000
2	603220	2020.08.06	2020.09.02.	2021.02.10	17,930,000

- 채권 분류 및 법원 공고자료를 활용하여 조정채권에 대해 정상진행, 변제금 입금누락, 폐지, 신용관리정보 등재 등 채권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채권관리 효율성 증대

4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법정출연요율 상향 추진

- ❖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 등을 향유하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법정출연제도 도입
- ❖ 소상공인 전담 보증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추진

□ 출연요율 현황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1000분의 3 (현행 0.225%)
- 기술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3조 : 1000분의 3 (현행 0.13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1000분의 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 1000분의 0.2 (현행 0.020%)
 - 법상 출연요율(대출금의 0.02%)은 보증규모의 급증('19년 118만개 업체, 22.1조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05년 최초 결정 이후 제자리
 - * 지역신보 보증규모(조원) : ('05) 3.4 → ('19.9) 22.1 (650% ↑)

□ 추진실적

-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추진 계획 수립
- 법정출연요율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등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
-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및 지역신문 등 다수
- 인천시의회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
- 정부 및 국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개선 의견 제출
 - 자영업자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요청
 -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하여 0.08%로 상향 요구
-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2020년 8월 개정, 2020년 10월 출연금 적용
 - 국무회의 결과 0.04%로 조건부개정 : 법정출연금 2배 확대

□ 기대효과

- 보증재원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공급 확대로 지역경제 성장 지원
- 출연금 확충의 다변화를 통해 인천시 출연금 의존도 탈피

5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 도입 및 운영

- ❖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 ❖ 영업점의 기한연장 업무부담 경감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현황

- 2019년 3월 :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 제도 도입
- 2020년 2월 : 대상보증 확대시행
 - ※ (변경 전) 같은 기업당 50백만원 이하, (변경 후) 본건 50백만원 이하
- 기한연장 대상 현황(연도별 목표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기한연장 목표	11,800/255,000	10,800/230,000	20,000/500,000	

□ 추진실적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총 기한연장 목표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처리	영업점[방문] 기한연장처리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 처리율
2019년	11,800/255,000	4,250/77,627	8,137/192,983	34.3%
2020년	10,800/230,000	6,566/130,505	5,220/143,606	55.7%
2021년 (10.31.기준)	20,000/500,000	22,079/555,708	3,809/116,420	85.3%

□ 기대효과

-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 실행으로 기존 방문 기한연장 방식 대비 시간절약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 지점의 기한연장 처리 업무 감소로 보증심사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의 확대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

[별첨]

□ 2020년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 만족도 조사결과 중 ‘시간절약’ 관련 문항

(문항) 무방문 기한연장을 통한 시간 절약

문항	응답자(명)	비중(%)
5시간 이상	110	40.0
3시간 이상	105	38.2
2시간 이상	44	16.0
1시간 이상	14	5.1
차이 없음	2	0.7



☞ 무방문 기한연장을 통해 1시간 이상 시간절약이 된다는 응답이 99.3%로 확인되며, 생업으로 바쁜 보증고객을 위한 비대면[무방문] 기한연장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6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인력 지원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세계 경제 및 지역 경제 침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긴급 자금 수혈
- ❖ 단기고용인력 채용 및 지원을 통한 지역 고용 창출 기여

□ 현황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및 소비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증가
-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악순환 우려

□ 추진실적

-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및 새희망자금 신속 지원 체계 구축
 - 보증실적 : 3,127건 및 918억원의 특례보증 지원
 -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속대응팀(4개)
 - 팀장 4명, 팀원 4명, 심사원 48명(계약직, 인천시 공무원 파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파견, 금융기관 파견 등)
 - 1차 보증업무지원 파견 계약 : 파견인력 8명(6개 지점 업무 지원)
 - 2차 보증업무지원 파견 계약 : 파견인력 17명(6개 지점 업무 지원)
 - 새희망자금 업무지원 : 243명 채용(인천광역시 내 114개 주민센터 파견)

□ 기대효과

- 신속대응팀, 보증업무지원 파견, 새희망자금 업무지원 인력 파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집행을 통해 지역 사회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침체된 지역 경제 속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 개선에 이바지함